## KOSHA GUIDE

## C - 48 - 2022

- (4) 운전자는 운행중 이상음,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.
- (5)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된다.
- (6) 조작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.
- (7)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.
- (8) 리프트는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.
- (9) 리프트 하강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.
- (10)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11) 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12) 탑승구 출입 및 화물적재시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.
- (가) 적재와 탑승을 위하여 운반구내에 들어갈 때는 리프트 주위에 설치된 방호울의 상태, 운반구 상부의 비상탈출구의 닫힘상태, 승강로 상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관찰하여 자재, 공구, 작업부설물 등의 낙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.
- (나) 화물을 운반구 바닥에 균일하게 분포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적재시키되 양쪽 마 스트 중심을 기준점으로 하여 하중을 분포시킨다.
- (다) 화물이 너무 길거나 넓어(파이프 및 합판 등) 운반구 출입문 밖으로 화물이 나와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에는 운반구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말고, 타워크레인 등 별도 의 운반기계를 이용하도록 한다.
- (라) 벽돌·모래 등의 소형화물 운반시는 상승중 운반구 철망 또는 틈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에 그대로 싣지 말고 손수레 및 적당한 용기에 담 아서 적재한 후 운반한다.
- (마) 무게가 가벼운 물건 및 단관파이프 등을 적재할 때는 운전중 승강로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운반구에 로프·고무줄 등으로 묶어 놓는다.